

# 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(추가공모) 공고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역 영상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우수 영화인 발굴·육성을 위하여 「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(추가공모)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5일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
- 사업목적: 경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구축
- 주최/주관: 경상남도/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
- 사업내용: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장·단편 극영화, 다큐멘터리 등 독립영화 제작 지원

## 2 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이행약정체결일 ~ 2023. 12. 15.  
※ 기간 내 영화제작 관련 대금 지출(원천세 포함)을 모두 완료해야 함
- 지원규모: 단편 3건 내외(심사결과에 따른 차등지원)  
- 지원신청 가능금액: 최소 7,000천원~최대 10,000천원

## ○ 지원내용: 순제작비 및 진행비\* 지원

지원가능		지원불가
사전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테스트 촬영 재료비, 기자재 임차비 등 사전제작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(카메라 등) 구입 등 자산취득성 경비, 경상비, 수리비용, P&amp;A비용 등</li> </ul>
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촬영, 녹음, 조명 등 기자재 임차비</li> <li>• 미술, 소품, 의상, 분장, 스타일, 로케이션 촬영 관련 비용</li> <li>• 배우 및 스탭 인건비 등 프로덕션 관련비 일체</li> </ul>	
후반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편집, 녹음, DI, 음향, 자막 등</li> </ul>	

\*진행비의 경우 지원 금액의 최대 30%까지만 편성 가능

## 3 | 지원대상 및 자격

### ○ 지원대상

- 완성작 내용의 30% 이상을 경남 배경으로 하는 촬영 개시 전의 작품
  - ※ 다큐멘터리의 경우 촬영이 개시되었어도 촬영 분량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 가능
  - ※ 완성작 내용의 30% 이상 경남을 배경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관련 사업 지원불가 조치 예정
- 독립 단편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

구분	단편부문	비고
지원대상	단편영화(60분 이내)	
지원금액	최소 7,000천원~최대 10,000천원	
지원건수	3건 정도	

### ○ 지원자격: 공고일 기준 경남에 소재지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구분	자격요건
개인	영화 활동 실적*이 있으며,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감독 본인
제작사	영화 활동 실적*이 있으며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제작사

#### \*활동 실적 기준(개인, 제작사 공통)

- 단편부문: 영화 연출 경력 1편 이상 또는 영화 스텝 참여 2편 이상 필수
  - ※ 신청주체가 제작사일 경우 신청 작품 연출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
  - ※ 애니메이션, 뮤직비디오는 인정하지 않음

## 4 | 신청 및 접수방법

- 공고기간: 2023. 6. 15.(목)~7. 5.(수) / 21일 간
- 접수기간: 2023. 6. 21.(수)~7. 5.(수) 17:00 / 15일 간  
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
- 접 수 처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
- 접수방법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온라인 접수
  - 공 모 명: 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(추가공모)
  - 공모기관(보조금 주관기관): 경남문화예술진흥원
- ※ NCAS 시스템에서 접수기간에만 제출 가능함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요망

### ○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형식	내용	비고
1	지원사업 신청서	한글파일 (hw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</li><li>- 저작권(판권) 소유 확인서</li><li>- 제작진 소개서</li><li>- 자격 및 활동실적 증빙서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개인: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(1년 이상 거주 증빙되어야 함)</li><li>· 제작사: 사업자등록증, 영화제작업신고증</li></ul></li><li>- 활동실적증빙: 서식 참조</li><li>-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</li><li>-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·예방 서약서</li><li>- 학약서</li></ul>	서식 참조
1-1	지원사업 신청서 (스캔본) ※ 필요 서류별 날인 필수	PDF파일		
2	발표자료	PPT 혹은 PDF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위주의 내용으로 발표자료 작성 (10분 이내 분량)</li></ul>	자유서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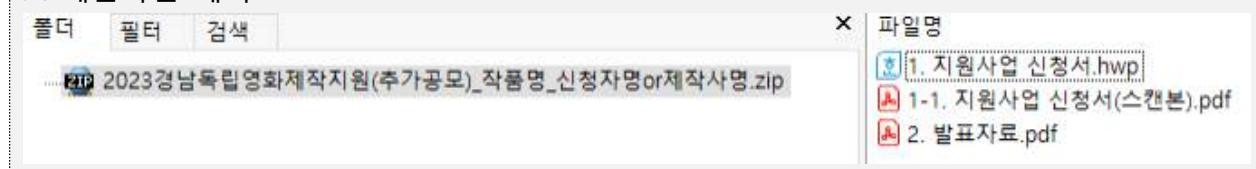
※ 상기 제출서류들을 ZIP파일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

※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

## ○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
- Windows PC 환경에서 확인 가능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
☞ **맥OS에서 작성 시 파일 깨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호환여부 확인 필수**
- 제출하는 스캔파일은 필수정보 인식이 가능한 해상도의 파일 제출 필요  
(너무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심사불가)
- 제출서류를 **1개의 ZIP파일**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
  - **압축파일명 : 2023경남독립영화제작지원(추가공모)\_작품명\_신청자명or제작사명.zip**
  -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, zip파일명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여 각각 업로드

※ 제출파일 예시



- 상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
-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 이후에는 상기 제출서류 외 최종 수행계획서,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등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### ▶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)을 통한 신청 · 접수 방법

-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
  - 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([www.gcaf.or.kr](http://www.gcaf.or.kr))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
  - ③ ②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를 zip파일로 압축
  - ④ 접수기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
  - ⑤ 메인 화면에서 보조금 주관기관을 '경남문화예술진흥원'으로 선택
  - ⑥ '현재 신청가능한 지원사업' 목록에서 '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(추가공모)' 선택
  - ⑦ [신청개요]란 작성 후 [첨부파일]란에 ③의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최종제출
- ※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
- ※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나,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 내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해야함
- ※ 지원신청 시 지원사업명 확인 필수

## 5 | 추진일정(안)

구분	일정	비고
사업공고	'23. 6. 15.(목)~7. 5.(수)	
지원신청서 접수	'23. 6. 21.(수)~7. 5.(수) 17:00	NCAS
사전 서류검토(적격여부 등)	'23. 7. 5.(수)~7. 12.(수)	
선정 심사(서류 및 발표심사)	'23. 7. 13.(목) <예정>	
선정발표	'23. 7. 17.(월) <예정>	누리집 및 개별통보
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	2023. 7월 중	
지원사업 진행(영화제작)	약정체결일~2023. 12. 15.(금)	
결과보고 및 정산	2023. 12월~2024. 2월	

## 6 | 선정방식

### ○ 심사방법: 서류 및 발표심사

-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실시

※ 발표심사 안내(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)

- 일시/장소: 2023. 7. 13.(목) 오후 예정 / 장소 미정(김해 또는 창원)
- 발표방법: 신청 시 제출한 발표자료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발표
- 발표자: 신청주체(신청자 본인, 제작사 대표 혹은 작품 감독)

- 적격여부 검토 결과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격사유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

### ○ 심사기준

구분	심사내용	평가항목		비율
서류심사	제출서류 전체	총점	100	30%
		- 작품성 및 예술성	40	
		- 독창성 및 참신성	40	
		- 연출력	20	
발표심사	제출서류 및 발표내용, 인터뷰	총점	100	70%
		- 제작의도의 적절성 및 완성도	40	
		- 작품제작 수행 역량	30	
		- 제작예산의 합리성	20	
		- 지역영상문화발전 기여도	10	

### ○ 선정발표: 2023. 7. 17.(월) 예정 ※ 누리집 공지 및 선정작 개별 통지

- 지원금은 보조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본 지원사업에 1건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.(중복신청 불가)
-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자는 이행약정 체결 시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자 본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합니다.
- 지원금은 신청주체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,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합니다. ※ 선정 후 지원금 집행·정산 관련 별도 교육 예정
- 지원금 교부 이후 집행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며, 교부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작품은 작품 완성본 크레딧, 홍보자료 등에 「2023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」 지원작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감독 또는 제작사에 귀속되나,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작품 제작 완료 후 경남 도내에서 시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.
- 이행약정 기간 내 작품 제작 완료가 원칙이며, 이행약정 체결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3년 간 동일 사업에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집행 시 고용보험(예술인 고용보험 포함), 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타 지자체·공공기관 등의 동일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
(지원금 재원이 국고일 경우 협의)
-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예정입니다.

## 8 | 문 의

- 지원사업 관련: 대중문화산업팀 윤지수  
 055)230-8821  [jsyn@gcaf.or.kr](mailto:jsyn@gcaf.or.kr)
- 시스템 관련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 1577-8751

항목	편성기준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촬영, 조명, 음향 등 스탭 인건비</li> <li>- 배우 출연료 등</li> </ul> <p>※ 신청자 본인 또는 대표자의 인건비 편성·집행 불가</p>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촬영, 조명, 음향 등 장비 임차료</li> <li>- 작품제작을 위한 의상, 소품, 촬영장소, 스튜디오 등의 일시 임차료</li> <li>- 촬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</li> </ul>
진행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필름, 소품, 의상 등 재료비(단가 10만원 이하)</li> <li>- 촬영을 위한 제작진·출연진 숙박비 (1인당 서울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밖의 지역 7만원 기준)</li> <li>- 촬영을 위한 제작진·출연진 식비(1인당 8,000원 기준)</li> <li>- 촬영을 위한 교통비, 촬영 차량의 유류비</li> </ul> <p>※ 진행비는 지원금액의 30% 이내 편성</p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순제작비로서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목</li> </ul>

※ 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

※ 계좌이체 수수료, 카드사용내역 알림 SMS 수신비용 등 편성·집행 불가